

2023년 중앙 및 지역 R&D과제 기획·유치 지원사업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『2023년 중앙 및 지역 R&D과제 기획·유치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혁신적인 R&D 기획 발굴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기업 및 대학,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5월 2일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목적

- 다양한 R&D과제 유치를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기반 확립 및 지역산업·경제 활성화
- 혁신적인 R&D발굴을 위한 과제 유형별 타겟팅을 통해 포괄적·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·집중적 지원

2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총 7개 내외(과제당 최대 1,500만원)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3. 10. 31(화)까지
- 지원대상 :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, 대구 내 주소지를 둔 대학,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또는 단독
 - ※ 주관기업은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 본사가 있거나 이전예정인 기업
 - ※ 주관기관은 대구광역시 내 주소지를 두어야 함(본사, 지역센터 등)

□ 지원분야

○ 전통산업 : 소재·부품, 섬유, 지능형기계, 도시형산업(뷰티, 식품 등)

○ 5대신산업 : UAM(도심항공교통), ABB(인공지능/블록체인/빅데이터)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

※ 우대사항 : 기업부설연구소, 벤처기업/이노비즈, 기술이전기업(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참여기업)

□ 지원내용

구 분	지원대상	대상사업	지원규모
첫걸음(지역) 과제	-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소기업* 단독 *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【별표 3】 기준	-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디딤돌) - 지역산업육성사업(주력·광역권) - 대구시 자체 R&D사업	- 과제 발굴·기획/전문가 컨설팅 및 회의비 등 - 과제당 최대 700만원
기반(소형) 과제	- 지역 중소기업* 단독 또는 산·학·연 컨소시엄 *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【별표 1·3】 기준	- 중앙부처 주도 R&D사업 중 사업비(국비지원금) 5억원 미만 * 첫걸음과제 대상사업 제외	- 기획연구회 자체구성·운영예산 지원으로 - 과제당 최대 800만원
확산(중대형) 과제	- 지역 중소·중견기업* 단독 또는 산·학·연 컨소시엄 *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	- 중앙부처 주도 R&D사업 중 사업비(국비지원금) 5억원 이상 * 첫걸음과제 대상사업 제외	- 기획연구회 자체구성·운영예산 지원으로 - 과제당 최대 1,000만원
도전(대형) 과제	- 산·학·연 컨소시엄 * 산학/산연 부분 컨소시엄도 가능	- 중앙부처 주도 R&D사업 * 첫걸음과제 대상사업 제외	- 기획연구회 자체구성·운영예산 지원으로 - 과제당 최대 1,500만원

○ 중앙 및 지역 R&D과제발굴·기획에 필요한 기획연구회 운영 및 전문가 매칭에 필요한 예산 지원

- 인쇄 및 도서구입비, 세미나개최비, 선행기술조사비, 회의수당, 전문가활용비, 원고 및 번역비 등

- 과제관련 회의비, 사무용품비

※ 기업부담금 없이 지원금 선지급(부가세는 사후환급 세금이므로 기업에서 부담)

○ 첫걸음 과제 발굴·기획을 위한 컨설팅(코칭)자문단과 기반·확산 과제 발굴·기획을 위한 기획연구회 구성 지원

○ 지원기간 종료 후 제출한 기획보고서(연구계획서)를 중앙부처별 전담기관 소속 전문가들(PD, 단장 등)에게 개별 검토받아 과제 기획 완성도 제고

□ 선정 및 지원방법

- 평가방법 :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(발표심사)를 통해 과제선정 및 지원금 조정
- 평가기준 : 정책적 적합성/부합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/우수성, 추진 전략의 적정성/타당성, 사업화가능성, 파급효과, 연구회 구성/운영
- 지원방법 : 사업비는 협약 후 대구TP에서 선지급하고 사업수행 후 보고서 검토 및 회계법인을 통해 후정산

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 및 제출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3. 5. 22.(월) ~ 2023. 5. 30.(화) 17:00까지

□ 접수방법 * 이메일 접수 + 우편/방문접수 모두 진행해야 접수완료

- ① 사업공고 ➡ 붙임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
- ② 신청서류 작성 후 직인날인하고 첨부서류 준비
- ③ 신청서류, 첨부서류를 1개 파일로 합쳐서 스캔(pdf)
- ④ eunhye@dgtp.or.kr로 접수 ➡ 담당자 서류확인 ➡ 보완요청
* 이메일제목 : R&D기획지원사업 신청_기업명
- ⑤ 보완완료 후 신청서류 원본/첨부서류 1부를 집게로 철하여 방문/우편접수
* 제본 및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
* 신청구비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제출서류
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(실무담당자 명함 첨부)
-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
- ③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제출)
* 대구광역시로 본사이전 예정인 기업은 임대계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
- ⑤ 2021 ~ 2022년도 표준재무제표 사본 1부
- ⑥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* 증명서 유효기간은 '23.06.08 이후
- ⑦ 우대사항 관련 인증서, 협약서 등 각 1부
- ⑧ 회사소개자료 1부(있을 경우)
- ⑨ 대상사업 모집공고문 1부(신청자격 확인용)

□ 접수처 및 담당자

접 수 처	이 메 일	eunhye@dgtp.or.kr
	방문/우편	[41256]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1동 9층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연구개발지원센터
담	당	자
		배은혜 선임연구원 (Tel. 053-757-3778)

4 대상사업 선택방법

- ※ 대상사업이란, 내년 주관기업(기관)이 신청할 R&D사업을 뜻함
- ※ 주관기업(기관)이 대상사업의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, 선정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음

☐ 첫걸음(지역)과제

- 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첫걸음)
 - ➔ 창업 7년 미만이면서 전년매출 20억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
- ②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
 - ➔ 대구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
- ③ 대구시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, 지역 정부출연연 협력 융복합R&D지원사업
 - ➔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
- ④ 기타 대구시 R&D사업 ➔ 관련 사업공고 확인

☐ 기반/확산/도전 과제

- ① 첨부한 <2023 정부연구개발사업 캘린더>에서 사업명 선택
- ② 사업주관 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 검색
- ③ 사업별 신청자격 확인 후,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금 검색
 - 국비지원금 5억 미만 ➔ 기반(소형)과제
 - 국비지원금 5억 이상 ➔ 확산, 도전(중대형)과제

5 유의사항

- ☐ 본 사업은 사업화지원(시제품제작, 마케팅지원 등)이 아닌, R&D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지원 사업임
- ☐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,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- ☐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고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☐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미집행 및 부정집행의 경우 반납

6 신청 및 지원제외 대상

※ 제외대상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게 있음

-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신청기업(기관) 중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-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,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절” 인 경우, **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**
※ 자본전액잠식이란, 결산재무제표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(단 창업 3년 미만기업은 예외)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장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그 외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
- 지원대상 제외에 신청기관, 신청기관장,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되며, 주관이 아닌 기관 또는 책임자가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가능
- 과제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